

■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2-167호

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 
부수업무 신고 사실을 공고합니다.

2022년 5월 2일  
금융위원회 위원장

- 다 음 -

1. 부수업무 신고 기관 : 에스케이플래닛(주)
  2. 부수업무의 신고일 : '22.4.27.
  3. 부수업무의 내용
    - 가명정보나 익명처리한 정보를 이용·제공하는 업무
- \* 「신용정보업감독규정」 제13조의4제4항제3호